

< 붙임 1 건본 >

---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1년도 투명성 보고서**

---

**2022. 6.**

**(주)스마트크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2년 6월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1년도 투명성보고서

## 1. 일반현황 (‘21년 기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스마트크루
대표자	박태형 대표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스마트파일 콘텐츠 이용자 / 약 2만5천명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	약 100억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조창현 부장

##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2022. 3월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2022. 3. 15., 문서번호 20220315-01-스마트크루)
  - (신고·삭제요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발견시 신고기능을 통해 접수하며,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 진행
  - (제목·명칭 식별 및 검색제한에 관한 사항)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제목·명칭등에 대해 식별 및 검색이 되지 않도록 설정
  - (영상물의 식별 및 게재제한에 관한 사항) 필터링(공공 DNA DB 또는 상용 필터링, 자체 필터링)을 통한 영상물에 대한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 여부 판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고지에 관한 사항) 팝업 또는 공지사항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촬영물등 의심 영상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그 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자체 교육을 통한 모니터링 인력의 인식 제고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적발된 이용자에게 대한 공지를 통해 경각심 고취

## 주식회사 스마트크루

수 신 내부결재

(경 유)

제 목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 1. 관련

- 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3735(2021.11.16.,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P2P) 대상 설명회 개최 알림)
- 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66(2022.01.11.,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안내)

### 2. 위 1항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의5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 6 등

나. 기재사항 [세부사항 붙임 참조]

-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검색제한 조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 신고접수 및 처리 결과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대한 내규 및 운영관련 사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진행 사항 등

주식회사 스마트크루



---

담 당 조창현  
협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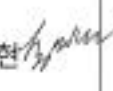

대 표 박태형

시행 : 20220315-01-스마트크루 (2022.03.15)

접수

우 08390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 / (www.smartfile.co.kr)

전화 (1899-5771) 전송 (02-866-9637) / (smart\_file@naver.com) / 공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담당자
결 재	조창현 	김병진 

# 2021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주)스마트크루

## 목 차



- |                 |         |
|-----------------|---------|
| 1. 계획 및 시행      | 3-5 P   |
| 2. 업무 대응 프로세스   | 7-8 P   |
| 3. 필터링 구축 현황    | 9-11P   |
| 4. 기본원칙         | 14-20 P |
| 5. 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 | 21 P    |
| 6. 유통방지 교육      | 21 P    |

## 2)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

### ○ 신고기능 마련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관계 법령(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이 시행된 2020년 12월10일부터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영상물 발견시 신고버튼을 통해서도 신고접수 가능하도록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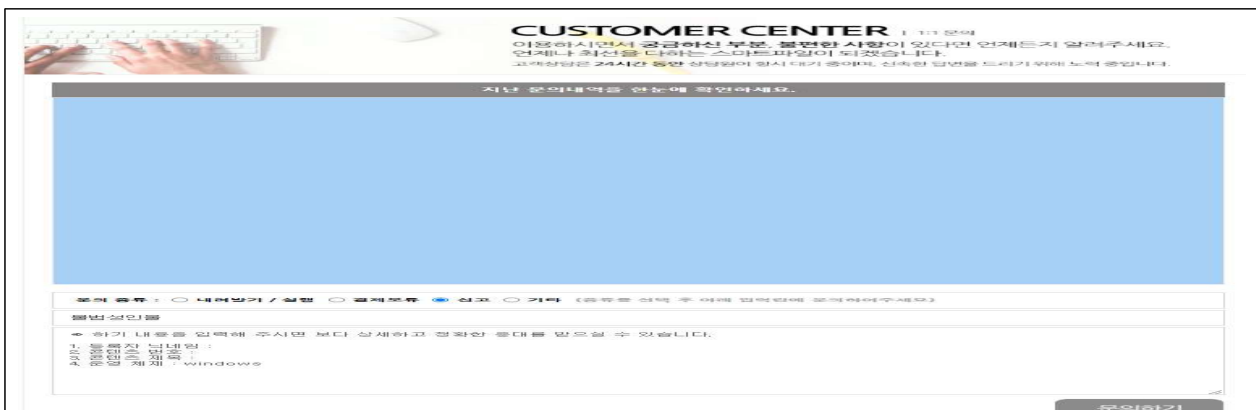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현황>

PC	Mobile
 <p>smartfile.co.kr/contents/view.php?gg=1&amp;idx=17859619#</p>	 <p>m.smartfile.co.kr/?cate1=2#x</p>

### ○ 신고처리 전담부서 운영

- (주)스마트크루 고객센터, 1899-5771 운영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의심영상물에 대한 전담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상담이 어려운 경우 1:1문의 또는 메일을 통한 상시 신고 가능

<고객센터 운영 현황>



CUSTOMER CENTER

이용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스마트파일이 되겠습니다. 고객상담은 24시간 동안 상담원이 항상 대기 중이며, 신속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단 문의태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 종류 :  내려받기 / 질문  결제문의  신고  기타 (문의종류 선택 후 아래 입력란에 보충하여주세요)

불법촬영물등

하기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1899-5771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9

이메일 : support@smartfile.co.kr

Windows

### 3) 불법촬영물등 검색 제한 조치

#### ○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 제한

-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능 적용

유해단어 리스트	전체/성인	불법촬영물	정준영	불법촬영물
	전체/성인	불법촬영물	박사방	불법촬영물
	전체/성인	불법촬영물	동영상	불법촬영물
	전체/성인	불법촬영물	버닝썬	불법촬영물
	전체/성인	불법촬영물	섹스	불법촬영물
	전체/성인	불법촬영물	알몸	불법촬영물
	전체/성인	불법촬영물	누드	불법촬영물
	전체/성인	불법촬영물	성관계	불법촬영물
	전체/성인	불법촬영물	몰카	불법촬영물
	전체/성인	불법촬영물	유출	불법촬영물
전체/성인	불법촬영물	학교여고생	불법촬영물	
검색결과 제한 화면	PC		Mobile	

#### ○ 불법촬영물등 연관검색어 등 제한

- 불법촬영물등 검색에 자주사용되는 단어 설정 여부,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 포함) 적용 여부 등 기재

구분	PC	Mobile
연관검색어 노출 제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동완성 검색어 노출 제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불법촬영물등 검색에 자주사용되는 단어 상시 삭제중	담당자를 지정하여 불법촬영물등 검색에 자주사용되는 단어 상시 삭제중



#### 4)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

###### o 식별 정보

- 서비스명 : IVMS Ver 1.0.0.1
- 개발사 : (주)에스피소프트
- 담당자 : 기술개발팀 정근호 과장(연락처 : 010-4399-1451,  
메일: jkh@spssoft.co.kr)

###### o 비교/식별 기술의 구현 형태

- 패키지소프트웨어(특징정보 추출) + 시스템구축(비교 · 식별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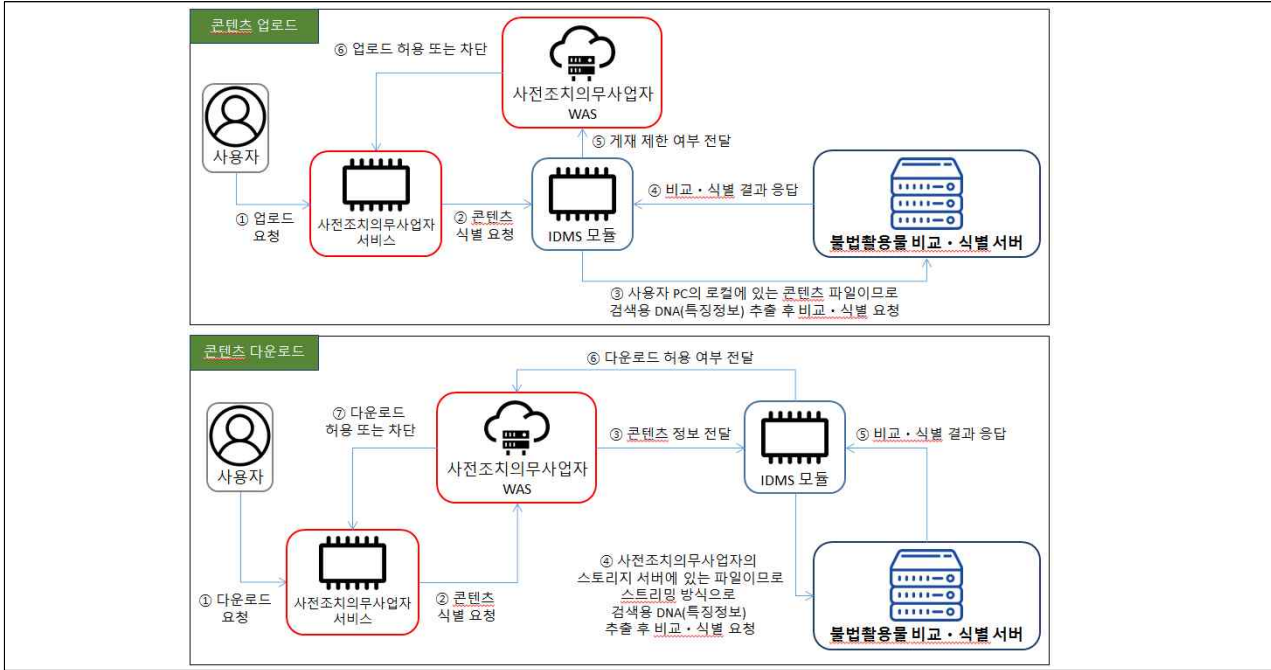
###### o 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하는 기술의 동작 방식(불법촬영물등 판단 기준 포함)

- IVMS 모듈은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자사의 모듈과 함께 배포, 사용자 PC에서 동작함
- 특징정보(DNA)는 DNA ID + DNA Value + Offse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의(Query)시 [불법촬영물 비교 · 식별 서버]는 내부 알고리즘을 통해서 DNA Value와 Offset이 일치하는 DNA ID를 응답하거나 찾지 못한 경우에는 null을 응답함
- 특징정보DB에는 불법촬영물의 특징정보(DNA)만 존재하므로 식별된 DNA ID가 있다면 불법촬영물로 간주
- 응답 받은 값을 사전조치의무사업자 WAS에게 전달하여 게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사용자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 및 (주)에스피소프트가 제공하는 모듈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업 · 다운로드를 시도,

[특징정보 비교 · 식별]을 위해 콘텐츠에서 특징정보를 추출을 우선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다양한 원인으로 특징정보 추출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특징정보 비교 · 식별]를 시도하지 않고 “알 수 없음”(Unknown)으로 판단하여 업 · 다운로드 차단으로 처리

< 특징정보 필터링 기술 개념도 >



o 자체 로그 형식 및 성능평가 수행 시 생성 로그 형식 비교

- 실제 서비스 운영 환경에서의 비교·식별 로그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 WAS에서 성능평가와 동일한 형식으로 로그를 저장
- 질의시작일(시간)은 추출이 완료 된 이후 WAS로 질의를 하기 직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 추출시작일(시간)은 DNA를 추출하기 직전의 시간을 의미하며 추출 종료일(시간)은 DNA추출이 실패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시)

[질의 시작일][질의 시작시간][질의 특징정보 파일명][질의 종료일][질의 종료시간][식별결과][매칭 특징정보 파일명]

1111,2222가 매칭되었을 때

2021-09-07,14:16:11,1111,2021-09-07,14:16:13,matching,1111,2222, null, null, null, null, null, null, null, null

매칭된 파일이 없을 때

2021-09-07,14:16:11,1111,2021-09-07,14:16:13,none

특징정보 추출이 실패했을 때

[추출 시작일][추출 시작시간][추출 파일명][추출 종료일][추출 종료시간][식별결


과]

2021-09-07,14:16:11,1111,2021-09-07,14:16:13,unknown

DNAID는 당사 DNAID발급 체계에 따름 (6자리 시퀀스값)

- 당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인 스마트파일은 동영상 업로드 시 불법촬영물등 게재제한 기술 적용완료

순 번	서비스명	필터링 적용	적용 기술	미적용 사유
1	스마트파일(웹하드)	유	IVMS Ver 1.0.0.1 (주에스피소프트)	-
2	스마트파일(웹하드)	유	CMC 필터링 (주에스피소프트)	-

성능평가 통과서류	필터링 계약 서류
 <p><b>CONFIRMATION</b> OF PERFORMANCE EVALUATION</p> <p><b>특징기반 필터링기술 성능평가 확인서</b></p> <p><b>에스피소프트</b>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3</p> <p>상기업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 기준에 따라 기술수준이 적합하였음을 확인하며 발급조건을 상시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동 확인서를 부여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분야 : 비디오</li> <li>평가대상 : 에스피소프트 특징기반 필터링기술 ver 1.0</li> <li>발행일자 : 2022-02-25</li> <li>확인서번호 : KCCPE2022005</li> <li>유효기간 : 2023-02-24</li> <li>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li> </ul> <p>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p>	<p>MISO 이용 계약서</p> <p>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주식회사 스마트크루'(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파일 (<a href="http://www.smartfile.co.kr">http://www.smartfile.co.kr</a>)과 '주식회사 피플커넥트'(이하 '피플커넥트'라 한다)의 통합솔루션 MISO 이용하는데 필요한 양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파일 공유 서비스: 복수의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중앙 컴퓨터 또는 공용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요구, 열람, 변경하는 컴퓨터 파일 사용 방법으로 웹하드 서비스, P2P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3. MISO: Multimedia Integration Solution for OSP의 약자로 "고객"이 PC 플랫폼을 통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을 말한다. 4. 필터링 서비스: 저작권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PC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특정검출 추출하여 피플커넥트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와 매칭비교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 식별을 통해 저작권상권(이하 '저작권'이라 한다) 침해로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복스캔(이미지) 필터링 서비스: 위 4번항에 명시된 콘텐츠 식별 기술을 통해 유통되는 복스캔(이미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 및 억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악성 프로그램 판별 서비스: 사업자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 변질, 변경, 위조,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별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p>

## 5)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 ○ 사전경고 조치 시행

- 불법촬영물 유통적발시 조치 사항 공지

<고객센터 운영 현황>

PC	Mobile
<p>공지사항</p> <p><b>[안내] 2021년도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아동,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발생 신고접수 및 처리방법</b></p> <p>안녕하세요! 회원님들에게 최고의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는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 거래소 스마트파일 운영됩니다.</p> <p>유해 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숙지하셔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p> <p>주선 24시간 고객센터 및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접수가 되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달이 되며, 해당 콘텐츠 확인을 하여 유해정보 확인이 되면, 2차 피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삭제 및 해시, DNA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p> <p>처리 결과는 즉시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별 통보하고 있습니다.</p> <p>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 정보로 판단되는 자료는 즉시 삭제를 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삭제 및 공지 처리하고 있습니다.</p> <p>해당 사항 관리를 위하여 <b>스마트 프라이버시</b>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페이지의 유해 콘텐츠는 정회원님들만 접근 가능합니다. 스마트 프라이버시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유해 정보 및 개인 정보침해에 관한 신고방법, 주의사항, 예방수칙을 통한 신고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스마트 프라이버시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1:1 문의사항을 통해 알려주세요가 바랍니다.</p> <p>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a href="http://www.smartfile.co.kr/bbs/bbs.htm?bbs_table=notice&amp;wr_id=754">www.smartfile.co.kr/bbs/bbs.htm?bbs_table=notice&amp;wr_id=754</a></p>	<p><b>[안내] 2021년도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아동,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발생 신고접수 및 처리방법</b></p> <p>안녕하세요! 회원님들에게 최고의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는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 거래소 스마트파일 운영됩니다.</p> <p>유해 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숙지하셔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p> <p>주선 24시간 고객센터 및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접수가 되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달이 되며, 해당 콘텐츠 확인을 하여 유해정보 확인이 되면, 2차 피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삭제 및 해시, DNA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p> <p>처리 결과는 즉시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별 통보하고 있습니다.</p> <p>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 정보로 판단되는 자료는 즉시 삭제를 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삭제 및 공지 처리하고 있습니다.</p> <p>해당 사항 관리를 위하여 <b>스마트 프라이버시</b>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페이지의 유해 콘텐츠는 정회원님들만 접근 가능합니다. 스마트 프라이버시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유해 정보 및 개인 정보침해에 관한 신고방법, 주의사항, 예방수칙을 통한 신고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스마트 프라이버시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1:1 문의사항을 통해 알려주세요가 바랍니다.</p> <p>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a href="http://m.smartfile.co.kr/customer/bbs_view.html?code=CC_CC_01&amp;idx=269">http://m.smartfile.co.kr/customer/bbs_view.html?code=CC_CC_01&amp;idx=269</a></p>

### ○ 로그기록 보관

-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추정되는 영상물을 시스템에 기록하고 있으며, 로그 기록이 위·변조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3년간 유지·관리하고 있음

<로그종류>

#### 1) 필터링 식별 로그 저장

- 식별시작일시, 서비스형태, 로컬파일명, 서버파일명, 식별종료 일시, 식별결과, DNAID, IVMS Key

#### 2)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처리 로그 저장

- 콘텐츠번호, 제목, 신고자, 신고내용, 신고일, 신고플랫폼, 처리(삭제 및 검토편)여부, 처리담당자, 처리일시

<로그기록 현황>

번호	콘텐츠번호	제목	신고코드	신고플랫폼	신고내용	신고일	종류	상태	담당자	처리일시	
27	1702600	[레전드]내자카레 스토로 보>를 먹이려는 건위 율연다 특속리뷰 MID6-705 Mitsuru Sakura 미루라 사무라	[3912393]	mbnlis19@naver.com	5	불법 성인 콘텐츠 / 개인 유출	2021-12-06 01:34:43	MOBILE	완료	김경철	2021-12-06
26	17819382	I NO I 대를사라코라비라 나나나아라 멧멍이 바는게나 호느	[16541710]	nace	5	불법 성인 콘텐츠 / 개인 유출	2021-12-05 23:04:43	MOBILE	완료	김경철	2021-12-05
25	17808772	2살 남자	[16541658]	pu2whok@nate.com	5	불법 성인 콘텐츠 / 개인 유출	2021-12-04 08:28:26	MOBILE	완료	최정아	2021-12-04
24	17806695	조견 알바 등 불법포로	[16541658]	pu2whok@nate.com	5	불법 성인 콘텐츠 / 개인 유출	2021-12-04 08:28:06	MOBILE	완료	최정아	2021-12-04
23	17783825	2살 남자	[17584407]	ch4ndn1799@naver.com	5	불법 성인 콘텐츠 / 개인 유출	2021-12-02 07:20:50	MOBILE	완료	남현준	2021-12-02
22	17764263	외모비교 영상물다위 캐로부 포로	[13410986]	ohvodn98@nate.com	5	불법 성인 콘텐츠 / 개인 유출	2021-12-02 01:37:55	MOBILE	완료	남현준	2021-12-02
21	7117758	광복날과이제 그리고 비운 직장이다 통시제하자	[3912383]	mbnlis19@naver.com	5	불법 성인 콘텐츠 / 개인 유출	2021-12-01 23:47:12	MOBILE	완료	남현준	2021-12-01
20	14966815	[성인]  불행러   시간제지 흡도등 - Kaixa	[18394241]	aj019574702@gmail.com	5	불법 성인 콘텐츠 / 개인 유출	2021-12-01 07:28:22	MOBILE	완료	최정아	2021-12-01
19	17746368	2살 남자 분장	[15604110]	rsjkr1004@nate.com	5	불법 성인 콘텐츠 / 개인 유출	2021-11-29 03:52:32	MOBILE	완료	김경철	2021-11-29

## 6)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 등 자체 노력 중
  -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경고 포스터 노출을 통한 이용자 경각심 고취
  - 스마트 안심신고센터 페이지를 운영하여 불법촬영물 신고 및 조치방법 안내

### <홍보 및 캠페인 현황>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전담부서 구축 및 모니터링 운영 계획
  - (주)스마트크루는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업로드 영상 콘텐츠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배정하여 불법촬영물이라 판단되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제재·차단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에 대한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및 필터링에 대한 상시교육을 시행중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시스템(필터링 등) 개발 구축
  - (주)에스피소프트사의 IVMS 필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특징정보추출 및 비교·식별 기술을 통한 불법촬영 콘텐츠 필터링을 진행중
- 기타 사업자가 마련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등
  - 회원가입 시 알림 및 쪽지로 사전경고, 판매회원 성인 카테고리 접근 시 사전 경고, 판매회원 자료 등록 시 사전경고를 통한 이용자 경각심 고취

##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2021. 1. 1. ~ 12. 31. 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른 별지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삭제요청 건수 없음
- 2021. 1. 1. ~ 12. 31. 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른 별지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 삭제요청 건수는 000건이며, 000건 삭제·접속차단 하였음

< 신고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계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및 처리결과 통계															
※ 대상기간 : '21.1.1. ~ 12.31.(신고접수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고 접수	신고·삭제 요청인	피해자 등 <sup>1)</sup>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관·단체 <sup>2)</sup>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신고사유 <sup>3)</sup>	성적 불법촬영물 <sup>4)</sup>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적 허위영상물 <sup>5)</sup>	0	0	0	0	0	0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sup>6)</sup>		0	0	0	0	0	0	0	0	0	0	0	0	0	
처리 결과	삭제·접속차단 <sup>7)</sup>	방심위 심의요청 <sup>8)</sup>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sup>9)</sup>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삭제·차단 사유	성적 불법촬영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적 허위영상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 ○ 관련 규정

#####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을 안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2020년 12월)됨에 따라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었다.

(주)스마트크루 역시 해당 법에서 정한 ‘사전조치의무 사업자’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용한다.

#####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제한

-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
- 불법촬영물등 게재 시 처벌가능성 사전경고
- 로그기록의 보관

▶ **(주)스마트크루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주)스마트크루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미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삭제요청 기능(참고: 불법촬영물등 신고 접수) 운영, 불법촬영물등의 검색결과 차단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물등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전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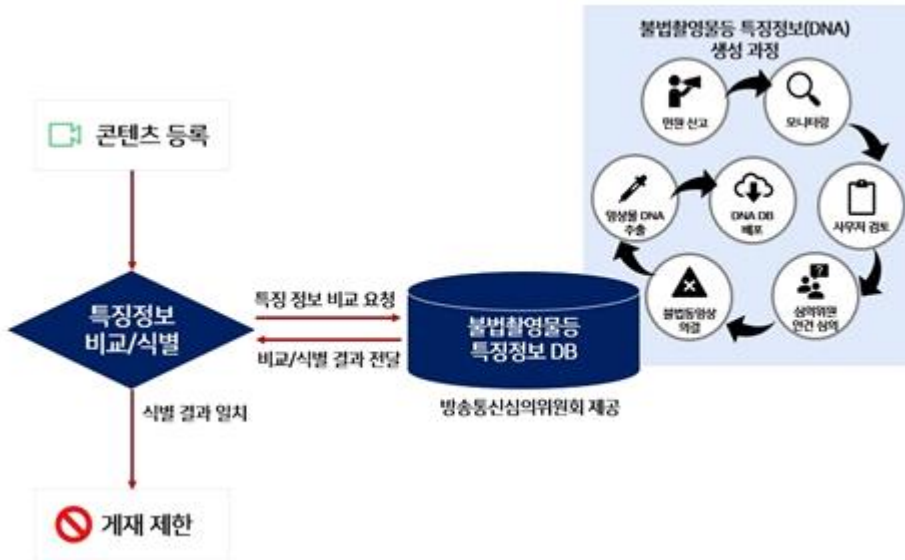
(주)스마트크루는 필터링 전문 업체의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하여 1차 필터링 프로그램으로 필터링하며, 2차 모니터링 담당 인력을 통해 영상에 대한 필터링을 한번 더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을 통한 음란·불법 게시물의 유통 차단을 하고 있다.

▶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 대해 설명**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를 시작하였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란,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스마트크루)의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정보를 추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게재제한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불법촬영물등 DNA 필터링’ 이라고도 한다.

스마트크루는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정보를 비교/식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징정보 추출기술을 적용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에 따라 스마트파일에 등록되는 영상에 대해 비교/식별을 진행, 식별 결과에 따라 게재제한 조치를 진행한다.



〈불법촬영물등 기술적 식별 조치 안내〉

▶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제한 조치된 게시물(콘텐츠)의 원본 삭제에 대해 안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 과정 및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되어 게재 제한 조치된 게시물(콘텐츠)의 경우 스마트파일의 서버 내에서도 완전히 삭제 조치 된다. 이러한 삭제 조치는 서비스 제공 업체가 서버 내 불법촬영물 등의 원본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조치이다.

서버 내 콘텐츠 원본에 대한 삭제 조치로 인해 한 번 조치된 게시물(콘텐츠)의 복구 등은 불가능한 점에 대해 안내 드리며, 법령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이용자에게 공지한다.

▶ 불법촬영물등이 게재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

불법촬영물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하지 않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촬영물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게시물의 게재 제한 조치와 함께 전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파일 서비스의 제한 뿐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점 안내하고 있다.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련 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다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조치의무사업자"란 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성능평가"란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하는 기술의 성능을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정량화하여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능평가기준"이란 성능평가 수행 시 적용하는 평가지표와 성능평가 통과기준을 말한다.
4. "성능평가 수행기관"이란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5. "특징정보"란 불법촬영물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보를 분석하여 조합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

## 제3조(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시행)

-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삭제요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목·명칭 식별 및 검색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물의 식별 및 게재제한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불법촬영물등의 신고기능 마련)

-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전자문서, 전화, 전자메일, 인터넷 홈페이지·앱의 자체 신고 기능 등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앱의 자체 신고 기능을 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삭제 요청의 처리)

-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전용 창구를 통하여 신속하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처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목필터링이나 문자열비교방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상시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2.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 제7조(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이나 성능평가 수행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적용 결과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식별되지 않아 게재를 허용한 경우라도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사전 경고 조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법 제22조의 5제1항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팝업창, 메일, 문자,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로그기록의 보관)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

- ①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
  2. 성능평가 기준 마련
  3. 성능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마련
  4. 성능평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②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능평가 신청 및 수행 현황
  2.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3. 그 밖에 성능평가 수행기관 관리·감독에 필요한 자료
- ③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능평가 기준 마련 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성능평가 기준)

- ① 성능평가 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별 가능성 :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변형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로 인식하는 비율
  2. 일관성 : 제1호의 반복 수행 결과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비율
  3. 그 밖에 성능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성능평가 통과기준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수행기관이 정한다.

#### 제12조(정보제공 요청 등)

-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에서 생성한 특징정보

2.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에서 생성한 특징정보
3.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 ②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변형물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생성한 특징정보
    2. 그 밖에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13조(운영·관리 실태의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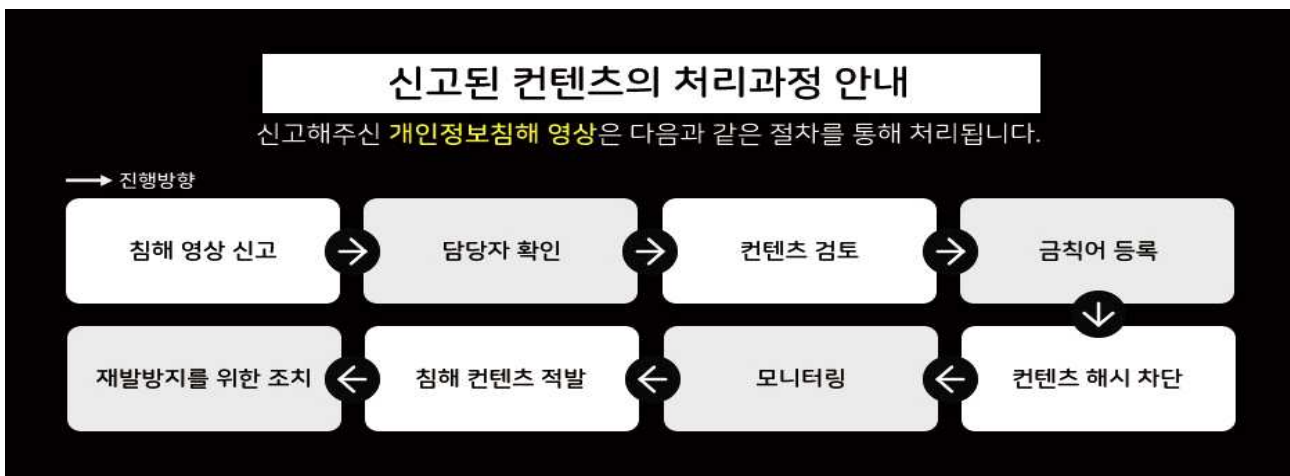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신고·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 회사내 신고·삭제 요청시 처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있을시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촬영물등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삭제·접속차단을 한다. 단, 확인·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해당 불법촬영물 등 게시자에게 경고문구 등 주의 안내를 보낸다.
- ③ 신고자에게 해당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결과를 회신한다.

< 신고 및 유통방지 절차 >



- 이의제기시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을 통해 진행한다.

○ 기타 운영관련 사항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①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시스템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과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불법촬영물 등 유통신고서 및 해당 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 이상 보관한다.

5.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구 분	정	부
성 명	조창현	김병찬
부 서	운영팀	운영팀
직 책	부장	대리
지정일	2020. 12. 10.	2020. 12. 10.

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구 분	교육일 (수료일)	교육명	참석자	시간	교육기관
교육실시	2020-12-12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안내	운영팀11명	2시간	자체교육
교육실시	2020-12-13	불법촬영물 사례 및 신고	운영팀11명	1시간	자체교육